

# 보 도 자 료

### 可以 互络桃 对故则于 吉州 圣林 子则 华山

보도 일시	2022. 9. 26.(월) 조간	배포 일시	2022. 9. 23.(금) 9:00
ㅗㅗ ㄹᠬ	2022. 9. 20.(절) 또한	메포 글게	2022. 9. 23.(日) 9.00
담당 부서	자본시장정책관 공정시장과	책임자	과 장 김광일(02-2100-2680)
		담당자	사무관 김은향(02-2100-2691)

# 「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」마련

- 자본시장 거래제한,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. -

- □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**일정 기간(최대 10년)** 동안 <sup>①</sup>금융 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, <sup>②</sup>상장회사에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겠습니다.
- ⇒ 이를 통해, **악질적·반복적 불공정거래** 발생을 **사전에 예방**하고, 건전한 **자본시장 질서**를 확립하겠습니다.
- ⇒ 금년 중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.
- □ 또한, 불공정거래에 대한 **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** 및 **과징금 도입** 법안도 **국회에서 조속히 통과**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.

### Ⅰ 추진배경

- □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**갈수록 다양화복잡화**되고 있으나, 그 **처벌**, **차단**, **예방**은 **효과적**으로 **이루어지지 못하고**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.
  - 특히,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는 상장사 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,
    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 반복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,
  - 그 여파로 **다수 일반투자자**가 **금전적 피해**를 입고, **우리 자본시장**에 대한 **신뢰도 훼손**시키고 있습니다.

#### <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 >

- ◎ (미공개정보이용) 코스닥 상장사인 A社의 임원진(대표이사, 사내·사외이사), 그 친인척, 업무 관련자 등 총 14인은 호재성 정보(유상증자, 전환사채 발행)가 공개되기 2달~몇 시간 전 A사 주식을 매수하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
- ◎ (시세조종) 과거 2차례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(1,000만원)·기소유예 조치를 받았던 전업투자자 甲, 乙은 그 이후에도 5년간 70여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<sup>\*</sup>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 취득
  - \* 가족·지인으로부터 모집한 수십개 계좌를 사용하여 테마주 등 주가 변동성이 큰 수십개 종목의 매매 유인을 위해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백만회의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
- ◎ (부정거래) 시세조종 전력자인 丙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액면가액으로 비상장사 B社를 인수한 후, 일반투자자 수백명에게 당사 주식을 수백억원에 매도 하는 과정에서 허위 과장된 사업내용, 상장 임박설을 유포
- □ '22.5월, 정부는 '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제고'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고, 그동안 정책세미나,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  - ▶ '22.6.17일, 「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」 정책세미나 (금융위 부위원장 참석)
  - ▶ '22.7.26일,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 (금융위 부위원장 주재)

## Ⅱ │ 현황 및 문제점

- □ [사건처리 현황] 최근 5년간('17~'21) 증권선물위원회\*(이하 '증선위')에 상정· 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, 연 평균 54.8건 수준입니다.
  - \* 금융위 산하 위원회로,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심의·의결기구
  - **위반행위 유형별**로는, 미공개정보이용이 가장 비중이 높고(43.4%), 부정 거래(29.6%), 시세조종(23.4%), 시장질서교란(3.6%) 順입니다.
    - < 최근 5년간('17~'21)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현황 : 위반행위별 >

구분		3대		시장질서	합계	
<b>丁正</b>	미공개정보	시세조종	부정거래	교란	업계	
<b>건수</b> (비중)	119건(43.4%)	64건(23.4%)	81건(29.6%)	10건(3.6%)	274건(100%)	

※ 동일 사건에 복수 유형 중복 시. 부정거래→시세조종→미공개정보이용→시장질서교란 順 분류

- 조치별로 살펴보면, 행정조치 없이 고발·통보 조치만 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(93.6%)을 차지하며,
- 이는 현행 제재체계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주를 이루는 3대 불공정 거래의 경우 형사처벌(장역, 벌금 등) 위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

< 최근 5년간('17~'21)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현황 : 조치별 >

위반행위	<b>3대</b> (미공개정보, 시	니세조종, 부정거래)	시장질서교란	<b>-</b>
조치	고발·통보	고발·통보 +행정조치 <sup>*</sup>	<b>행정조치</b> (과징금)	합계
<b>혐의자수</b> (인)	1,006	22	47	1,075
비중(%)	93.6	2.0	4.4	100.0

- \* 금융투자업자 제재(직무정지, 해임요구, 기관경고 등), 과태료 등
- □ [제재측면의 문제점]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조치수단이 부족 하여, 효과적인 제재 및 불법이익 환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.
  -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**장기간(평균** 2~3년)이 소요되며, 그 전 까지 위법행위자는 **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**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의 적시성이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.
  - 또한, 형사처벌은 특성상 **엄격한 입증책임**이 요구됨에 따라 **기소율 및 처벌수준이 낮으며\***(제재의 실효성 미흡), 그 외에 위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**다양한 행정제재 수단**이 **부재**(제재의 억지력 미흡)함에 따라.
    - \* 고발·통보된 사건('16~'20년, 수사완료건 기준) 중 불기소율 : 55.8% 3대 불공정거래 대법원 선고('20년) : 실형 38명(59.4%), 집행유예 26명(40.6%)
  -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\*하고 있습니다.
  - \* 3대 불공정거래 사건 전력자 현황(증선위 조치 기준) : ('19) 17명/110명(15.4%), ('20) 28명/98명(28.5%) ('21) 21명/99명(21.2%)
  - \*\* 해외 주요국(美, 英, 홍콩, 캐나다 등) 대부분 자본시장 거래제한,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활발히 활용 중
  - 마지막으로, 불공정거래와 같은 **경제적 동기**에 기인한 위법행위는 불법 이익을 박탈하는 **금전적 제재가 효과적**인 수단이나.
  - 현재 불공정거래(3대)에 대한 **과징금 제도 부재**, **법상 부당이득 산정기준** 미비로 인해 **불법이익 환수**가 **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** 있습니다.

## Ⅲ 대응 방안

#### 가. 정책 방향

- □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, 제재수단을 다양화하여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. (☞ 자본시장법 개정사항)

  - □ 또한, 국회 계류 중인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.

#### 나. 자본시장 거래제한 도입

- □ [거래제한 대상] 증선위는 3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'거래제한 대상자'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- □ [거래제한 범위] 거래제한 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(증권, 파생상품)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이 제한됩니다.
  - 이 때, '거래'란 제한 대상자가 명의를 불문하고 **자기의 계산**으로 행하는, **직·간접적인 금융투자상품 거래**행위를 의미합니다.
    - \* 예 : 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거래, 주식 대여·차입
  - 다만, 이미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거나,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거나.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.
    - \* 예: 대주상환을 위한 매수, 旣보유 상품 매도, ETF 등 간접투자, 주식배당에 따른 주식 취득
- □ [거래제한 기간] 증선위는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위반 행위의 내용·정도·기간·횟수 등을 고려하여 거래제한 기간을 결정합니다.
  - \* 하위규정을 통해 세부 조치기준 마련·운영 예정

□ [조치예정자 권익보호] 거래제한 조치 예정자는 증선위의 조치 심의 단계
에서 <b>사전통지·의견제출 기회</b> 가 부여되며, 증선위의 <b>지정조치에 불복</b> 하는 경우에는 <b>이의를 신청</b> 할 수 있습니다.
<ul> <li>또한, 추후에도 증선위는 법원 무죄판결, 증거서류 오류 등으로 조치가 위법·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를 하여 조치를 해제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. (당사자 신청 또는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 절차 개시 가능)</li> </ul>
□ [실효성 확보] 금융당국은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(거래제한 대상자 인적사항, 위반내역, 거래제한 기간 등)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습니다.
<ul> <li>또한, 거래제한 대상자가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제한 대상자 및 그 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/li> </ul>
* 다만, 당해 거래를 통해 또다시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는 경우 별도로 제재(형벌, 과징금 등)
다.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도입
□ [선임제한 대상]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'선임제한 대상자'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'선임제한 대상자'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 □ [선임제한 범위] 선임제한 대상자는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의
'선임제한 대상자'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  □ [선임제한 범위] 선임제한 대상자는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의 선임이 제한되며,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임원 직위가 상실됩니다.
'선임제한 대상자'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  □ [선임제한 범위] 선임제한 대상자는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의 선임이 제한되며,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임원 직위가 상실됩니다.  ○ '임원'이란 이사, 감사 및 사실상 임원(업무집행책임자* 등)을 의미합니다.

- □ [실효성 확보] 금융당국은 선임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습니다. ('자본시장 거래제한'과 동일)
  - 또한, 상장사가 선임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, 당해 상장사 및 제한 대상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#### 라. 부당이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(旣추진중)

- □ 불공정거래로 인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'부당이득 산정 방식 법제화' 및 '과징금 도입'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 입니다. (☞ 별첨 파일 p.11 참고)
  - \* (부당이득 법제화) '20.6월 박용진 의원안 / (과징금 도입) '20.9월 윤관석 의원안
  - ㅇ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### Ⅳ 기대효과

- □ 갈수록 **다양화복잡화**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**적시에 탄력적으로 대응**함으로써, 불공정거래를 **사전에 예방**하고 **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**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  - 이를 통해, 궁극적으로는 "**믿고 투자**할 수 있는 **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**"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### ♡ 향후계획

- □ 자본시장 거래제한,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 하여, 금년 중으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.
- □ 또한,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# ※ 별첨 : 「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 방안」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	김광일 (02-2100-2680)
<총괄>	공정시장과	담당자	사무관	김은향 (02-2100-2691)
<공동>	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	책임자	국 장	고영집 (02-3145-5550)
		담당자	팀 장	이장준 (02-3145-5540)
<공동>	한국거래소	책임자	부 장	이재훈 (02-3774-9020)
	시장감시본부	담당자	팀 장	안현수 (02-3774-9021)





## 1.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은?

- □ **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** 대한 **엄정히 대응**하고, **효과적 근절을** 위해 **다방면**에서 **정책적 노력을** 기울여 나가겠음
  - (불공정거래 조사) 심리(거래소) 조사(금융위/금감원) 수사(검찰/ 특사경) 기능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여,
  - 행정조사의 완결성을 제고하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
  - (불공정거래 제재) 과징금, 자본시장 거래제한,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도입하여,
  -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고,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
  - (내부자 거래) 상장사 내부자의 주식매매계획을 사전 공시토록 하고(9.13일 既발표), 대주주의 경영권 거래 시 일반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(10~11월중 발표 예정)하여
  -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,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

## 2. 제한기간의 상한을 10년으로 설정한 근거는? 해외에 비해 과도하게 긴 것은 아닌지?

- □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임
  - 시장질서 및 일반투자자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악질적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각오로, 법령상 최대 상한을 높게 설정하였음
- □ 해외도 **캐나다, 미국** 등 **일부 국가**의 경우 **영구적**으로 자본시장 거래 또는 임원선임 **제한 조치**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

3.	자본시장	거래 기	제한, 성	상장사	임원선임	제한	조치는	개인의
	재산권 및	직업신	선택의 🤅	자유를	침해할 3	·지가	있다고	보는데?

- □ 불공정거래 사건 중 **상장사 내부자**(임직원 등) **연루 사건, 전력자의** 위법행위 재발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
  - \*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내부자 연루 비중('19~'21, 거래소 통보 기준) : 68.7%(213/310건) 불공정거래(3대) 사건 중 전력자 비중('19~'21, 증선위 조치 건 기준) : 21.5%(66/307명)
  -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자유뿐만 아니라 **건전한 자본시장 질서**를 확립하고 **일반 투자자를 보호**할 **법적 이익**도 **매우 중요**
- □ 또한,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는, 다음과 같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할 예정
  - (예측가능성) 사전에 정해진 법상 조치기준에 따라 운영
  - (구체적 타당성)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**일률적인 제한**이 아니며, 개별사안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기간을 차등화
  - (절차적 정당성) 이의신청, 재심의 등 제한대상자의 권익보호 장치 마련
- □ 한편, 해외 주요국(美, 英, 홍콩, 캐나다 등)도 **자본시장 거래제한**, **상장사 임원선임 제한** 등 다양한 조치를 **활용 중**

# 참고2

#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(요약)

	자본시장 거래제한	상장사 임원선임 제한				
제한대상	■ <b>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</b> 로서, 증선위에서 ' <b>거래제한 대상자</b> ' 또는 '선임제한 대상자'로 지정한 자					
제한범위	■ <b>금융투자상품</b> (증권, 파생상품) <b>신규 거래</b> <sup>*</sup> 및 <b>계좌 개설</b> 으로의 <b>선임 및 활동</b> * 단, 일부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 * 사실상 임원 포함					
제한기간	■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제한 기간을 결정					
조치예정자 권익보호	■ 사전통지·의견제출, 이의신청, 재심의					
시하서	■ 제한대상자 지정사실 공표					
실효성 확보	■ 제한 조치 위반시 <b>제한대상자</b> 및 <b>금융회사</b> 에 <b>과태료</b> 부과	■ 제한 조치 위반시 <b>제한대상자</b> 및 <b>상장사</b> 에 <b>과태료</b> 부과				